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27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조인철·한정애·주철현

박수현 • 이개호 • 안도걸

서천호 • 박용갑 • 양부남

이광희 • 이재관 • 이건태

정진욱 • 박지혜 • 권향엽

노종면 · 고민정 · 정혜경

이훈기 • 윤건영 • 문금주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 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제44조제1항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1.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2. 허위조작정보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 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 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 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의도적 으로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호) ① ----다음 각 호의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 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신 설> 2. 허위조작정보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신 설>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②·③ (생 략) <신 설> 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적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2. (생 략) <u><신 설></u>

<u>4의3.</u> · <u>4의4.</u> (생 략)

5. ~ 25. (생략)

④ (생 략)

	3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 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 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 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 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 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 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1. ~ 4의2. (현행과 같음)
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 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u>4</u> 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 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
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4의4. · 4의5. (현행 제4호의3및 제4호의4와 같음)	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
4의4. · 4의5.(현행 제4호의3및 제4호의4와 같음)	는 영상 등의 정보에 전자적
및 제4호의4와 같음)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u>4의4.·4의5.</u> (현행 제4호의3
5. ~ 25. (현행과 같음)	및 제4호의4와 같음)
	5.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